





##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공 정 식\*

### 〈요 약〉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민관협동모델, 신변보호,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보호사**

\* 교신저자 : 공정식, 16213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8번길 48-8, 401호 한국범죄연구원 /  
경기대 융합교양학부 심리학박사, 031-253-7776, e-mail : crime0824@hanmail.net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서 론</li> <li>II. 선행연구검토</li> <li>III.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li> <li>IV. 경찰의 민관 협동과 연계</li> <li>V. 결 론</li> </ul> |
|----------------------------------------------------------------------------------------------------------------------------------------------------------|

## I. 서 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731호, 2005.12.23)된 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에 이르러 늦게나마 경찰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법무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이 경찰로까지 더욱 확대되는 발전이 기대된다. 사실 연간 200여만건 이상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는 매우 소홀했던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송광섭, 2007:235).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2,006,682건이고 그 중 강력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범죄는 929건, 강도범죄 1,980건, 성폭력범죄 22,310건, 방화범죄 1,743건, 폭력범죄 294,188건이다(범죄백서, 2015). 이를 시간당 계산해보면, 2013년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약 5,5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 살인은 약 9시간마다, 방화는 약 5시간마다, 강도는 약 4시간마다, 성폭력은 약 30분마다, 폭력은 약 5분마다 1건씩 강력범죄가 발생한다. 이는 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도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이듯이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조기에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료적 형태의 모습으로 출발하였고, 아직은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앞당길 수 없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오면서 현재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의 개설, 그리고 지역별 네트워크의 구축 등은 매우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찰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가 주 업무이고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경찰의 직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직후 위기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배려가 매우 부족하였고, 이는 경찰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올해 경찰에서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편 범죄사건이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공무원이 경찰임에도 사건직후부터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 단계별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을 비롯하여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동안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주로 범죄예방과 자율방범 등 치안에 초점을 둔 시민참여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듯이(양문승, 2003:81; 송건섭, 김상길, 2003:233; 최종술, 2002:39),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영역에서도 민관협동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 및 통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들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검토

형사사법의 역사를 보면, 중세이후 범죄문제는 국가와 범죄자의 관계로 치부되었고, 프랑스 혁명직후 권리선언 제9조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가 되면서 형사사법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반면에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보다도 관심 밖의 인물로 비취져 왔다(송귀채, 2014). 범죄피해자가 법적, 제도적, 실무적, 그리고 사회 복지적 관점 등 제반 분야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성호, 김상균, 신석환, 2005). 2013년 한해 범죄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비용은 1,903,693백만원인 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비용은 66,220백만원으로 범죄가해자 대상 사회적 지원 비용의 3.5%에 불과하다. 여전히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김현정, 공정식, 2015:8). 법익의 실질적 침해 당사자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이다(송귀채, 2014).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사건직후부터 온 가족이 뭉쳐서 복수적 관념으로 사건에 장기간 매달리게 되며, 결국 피해자들은 고통때문에 자기파괴적 심리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범죄 가해자는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단계까지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법단계를 거치는 동안 모든 보호와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역사는 1970년대이지만,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sup>1)</sup>. 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확대, 사건이후 형사사법절

1)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일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1981년 7월 3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 범죄유형(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와 강도 등)에 대하여 소송촉진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제27조 제5항)이 도입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1987년 11월

차에 접하면서 받는 2차적 피해예방, 실효성 있는 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sup>2)</sup>이 제정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sup>3)</sup>(김지선, 이동원, 2006; 황지태, 노성호, 2010).

현재 우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의 배정<sup>4)</sup>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강력범죄, 그중에서도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범죄유형의 피해자는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임노현(2007)은 우리 사회의 범죄피해자 지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표방하고 있을 뿐 내용은 대부분은 여성 또는 청소년(아동)에 대한 일반적 보호를 표방한 단체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지 부수적인 활동목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범죄 유형과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의한 지원활동이 확대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홍태석, 2012). 대부분의 기존 민간단체들은 주로 여성(성폭력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아동학대 및 성학대), 노인(노인학대) 등 특정 대상들을 지원하여 왔지만,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는 소홀했던 점이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조직이고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up>5)</sup>.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명되던 중 2003년 김천·구미지역에서 검찰의 후원과 협력을 얻어 민간이 주도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음 선을 보였다(김재민, 2012). 이후 2004년 10월 대검찰청에서 전국 각 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축을 지시하여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까지 전국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소재지를 중

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및 증인보호규정이 신설되었고,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정책 개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기본이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방향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김재민, 2012).

3) 1981년 7월 3일 정부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의사를 밝힌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가 시작된다. 이후 다음의 표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와 같은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송병호, 2014).

〈표 1〉 한국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제도 및 법률

연도	법률 및 기관신설	내용
1987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199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및 증인보호규정 신설
1992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
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 신설
199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진단제도,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 등을 인정하는 입법조치 이루어짐
199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
199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0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장애인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장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200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초설립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200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지원
2005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요건을 완화
2006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자의 권리장전’ - 범죄피해자의 개념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형사조정을 기본내용으로 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이 마련됨
2010	범죄피해자구조법 폐지 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	범죄피해자구조 범위 확대,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4) 국내 정부조직 중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범죄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청의 경우에는 전체 기금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수많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피해자지원활동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정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형사사법기관에 피해가 통보된 범죄피해자에게 한정되고, 범죄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우며, 재정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서비스는 범죄피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과 접촉을 꺼리

심으로 5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15년 현재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59개로 증설되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의 제약, 제한된 서비스 및 종사자와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지원 업무의 편차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지선, 이동원, 2010; 공정식, 2014). 또한 법무부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정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치성과 자립성을 상실하고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지연, 차훈진, 2013). 또한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외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이 24.5%로 낮게 나타났고(황지태, 노성호, 2010), 연간 약 30여만명에 달하는 강력범죄의 피해자 수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센터의 숫자가 너무 적으며,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60-70% 정도 받고 있는데, 이는 90% 이상의 지원을 받는 영미와 유럽의 민간센터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김혜경, 오경식, 2014:29).

2010년 7월 법무부는 서울 스마일센터를 개소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채정호, 2010).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임시보호소의 기능 등을 갖고 있다. 특히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학적 진단과 평가,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재활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강력범죄피해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sup>6)</sup>. 그러나 상대적으로 법률·복지·생활 지원 등의 기능은 부족하므로 강력범

는 피해자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지원이 가능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다양한 피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금지원에 편중된 국가의 피해자 지원활동에서 벗어나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건 직후 초기단계에서의 긴급지원(범죄현장에서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소)과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심리치료, 자조모임, 멘토링, 주거환경개선,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취업지원, 의료 및 치료비 지원, 경제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실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김현정, 공정식, 2015:23-36).

6) 스마일센터의 주요 업무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핵심 업무이며, 그 외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홍보, 연구 등의 업무가 제시되어 있다. 스마일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1) 살인, 강도, 상해, 폭력, 방화 등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범죄중

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그러함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수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었던 우리사회의 범죄피해자지원체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는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주거환경개선, 심리치료, 법정동행 및 신변보호, 자조모임 지원 등 민간부문<sup>7)</sup>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해오기는 했으나, 경찰청에 전담부서(피해자보호담당관실)를 설치한 것은 2015년에 와서야 이루어졌고, 현재 지방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피해자보호·지

〈표 2〉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처음 받은 기관분포 (단위 : 명(%))

기관명	빈도(%)
경찰(인권보호센터)	288(24.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84(15.9)
가정폭력상담소	182(15.7)
성폭력상담소	126(10.9)
법률구조공단	114(9.8)
아동관련 상담소	56(4.8)
검찰(피해자지원실)	43(3.7)
법무부(구조지원과)	4(0.3)
기타	161(13.9)
합계	1,158(100)

출처 : 황지태, 노성호, 2010

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우선성과 정당성은 다음

- 격을 잇기 위해 가능한 한 범죄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3) 범죄흔적이 남아 있어 청소 등 현장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들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는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및 1개월 이내의 단기적 임시주거 제공(생활관 운영) 등이다(김현정, 공정식, 2015:36-44).  
 7)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및 활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는 정부의 구조금 지원, 주거지원, 보복범죄 주거 이전비 지원, 위치확인장치 지원 등이 해당한다(송귀채, 2014).

〈표 3〉 피해범죄유형과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 교차분석 (단위 : 명(%))

기관명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합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9 (24.5)	11 (6.2)	42 (11.3)	32 (15.7)	184 (15.9)
검찰 (피해자지원실)	31 (7.7)	2 (1.1)	5 (1.3)	5 (2.5)	43 (3.7)
경찰 (인권보호센터)	130 (32.3)	22 (12.4)	58 (15.6)	78 (38.2)	288 (24.9)
법무부 (구조지원과)	3 (0.7)	1 (0.6)	0 (0.0)	0 (0.0)	4 (0.3)
법률구조공단	43 (10.6)	8 (4.5)	4 (1.1)	59 (28.9)	114 (9.8)
가정폭력 상담소	65 (16.1)	102 (57.3)	11 (3.0)	4 (2.0)	182 (15.7)
성폭력 상담소	11 (2.7)	4 (2.2)	110 (29.6)	1 (0.5)	126 (10.9)
이동관련 상담소	3 (0.7)	2 (1.1)	48 (12.9)	3 (1.5)	56 (4.8)
기타	19 (4.7)	26 (14.6)	94 (25.3)	22 (10.8)	161 (13.9)
합계	404 (100)	178 (100)	372 (100)	204 (100)	1,158 (100)
카이자승값	792.7(df=24)***				

출처 : 황지태, 노성호, 2010

의 연구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최초로 범죄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에 관한 조사결과(황지태, 노성호, 2010), 응답자 1,158명 중 24.9%(288명)로 경찰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15.9%(184명), 가정폭력상담소 15.7%(182명), 성폭력상담소 10.9%(126명), 법률구조공단 9.8%(114명), 각종 이동관련 상담소 4.8%(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발생 직후 최초로 접하는 공무원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국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황지태, 노성호(2010)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인권보호센터)에서 처음 서비스제공을 받은 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는 점은 모든 형사사법 기관 중에서 경찰이 가장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전담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직은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제도나 프로그램별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 Ⅲ.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 1. 미국

미국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Crime Victims' Right in America, A Historical Overview, 1999 NCVRW Resource Guid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00). 먼저 제1단계는 1960년대 중반이후의 범죄피해자보상법의 제정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65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까지 뉴욕, 매사추세츠 주등이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 있어서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피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보상법의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것이 미국 각 주로 확대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단계로서는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민의 피해자지원조직에 의한 긴급시의 서비스 등 각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3개의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후 전미로 확대되어 실시된 시기이다. 3단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실시된 다양한 범죄피해실태조사에 의해(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3:20) 범죄피해와 비

교하여 범죄피해신고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일부 피해자가 피해동보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무신경한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실태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시책이 형사사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박성배, 2015:15-16).

1970년대 이후 민간 자원봉사자에 의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1만개 이상의 범죄피해자 지원조직이 활동 중에 있다. 1982년에는 연방정부가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VWPA)<sup>8)</sup>’을 제정하였고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VOCA)’, 1997년에 ‘피해자의 권리명확화법(The Victims Right Clarification Act; VRCA)<sup>9)</sup>’ 등이 제정되어 각 주의 피해자 보상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기금마련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박동수, 2004). ‘범죄피해자법(VOCA)’의 보조금으로 전국지원 조직인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와 1985년에 설립된 범죄피해자보호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가 있다.

특히 뉴욕 주의 행정부법 제23조(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Executive, Article 23)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공정한 처우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경찰국, 지방검사, 법원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지방경찰국 및 지방검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역내에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소재지를 고시하며, 형사사법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증인의 역할, 공판의 각 단계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지방검사에게 피해자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체포, 사법관에게 제1회 출두일, 석방, 소추진행과정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사무관에게 피해자통지서를 제출하면 수형자의 도주, 석방, 일시

8) 1982년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중죄로 규정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첫째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적정화(예, 증인에 대한 독립된 대기실의 확보, 수사기관에의 피해자 지원활동에 관한 연수 등)’, 둘째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예, 판결전조사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영향에 관한 진술도입, 보석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 존중 등)’, 셋째 ‘피해배상의 제도화(예, 피해배상을 주형으로 도입 등)’이다(박성배, 2015:18-19).

9)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해의 영향에 관한 증인으로서 사형 및 그 이외 사건의 양형단계에 출정하는 것을 기존의 연방법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박성배, 2015:23).

적 석방, 가석방의 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성배, 2015:25).

## 2. 영국

영국은 1964년에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를 요강의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1970년대에는 전국범죄자갱생보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NACRO)의 활동의 하나로 지역의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갱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 등이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시작되었다. 이것이 1974년 설립된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이하 VS)로 발전하였고, 그 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조직과 활동을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1979년 전국 규모의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전역에 소재하는 470여개 지방조직의 네트워크로서 범죄피해자 및 증인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VS는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VS는 범죄발생일자나 경찰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한다. VS의 피해자지원 기본원칙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엄수를 하고 지원요청 여부는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며, 경찰 등 다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판결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내무성의 표준화된 피해자지원업무지침을 준수한다(공정식, 2014:456-457).

1982년에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범죄피해실태조사(Hough, M. & Mayhew, P, 1983)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무작위로 선출된 세대에 대하여 과거 1년 정도의 범죄피해, 경찰에의 신고상황 및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경찰의 인지 건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암수를 포함한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1995년의 범죄피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에 의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1996년에는 ‘피해자헌장’을 개정하여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피해자를 위해 제공할 업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박성배, 2015:28-33)<sup>10)</sup>.

10) 이외에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에

첫째로 경찰의 업무로서는 ①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 ②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다. 피해자현장에는 경찰이 범죄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하여 청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으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수사관에 의한 대응 및 카운슬링, 조인, 진찰 등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피해에 관한 상담소의 운영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보상 외에도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에 영국에서는 수사(사건의 진행상황 등) 및 재판(소추결정 및 판결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 경찰이 주도하여 수사단계만이 아니라 그 후의 소송 경과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두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검찰의 업무로서는 1994년 검사의 규칙(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1994)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① 피해자에의 증인신문의 한정, 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 ③ 경찰을 통한 소송의 경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④ 변호사의 소개, ⑤ 다양한 결정에 있어서 유족에 대한 의견청취 등<sup>11)</sup>이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에 의해 발생한 불이익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하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접촉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① 경찰이 통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 ②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이름, 전화번호를 통지 받을 것, ③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 받을 것, ④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교부 받을 것, ⑤ 유족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 ⑥ 성범죄피해자 및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대응할 것, ⑦ 피해감정 등에 대하여 경찰이 파악하고 배려할 것, ⑧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할 것, ⑨ 검찰이 유족에 대해서도 기소결정에 관한 설명을 할 것, ⑩ 중대사건의 경우에 보호관찰소는 석방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 ⑪ 교도소에 대하여 불안을 호소할 수 있을 것, ⑫ 형사법원에 있어서 증인서비스를 받을 것 등이다. 또한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피해자현장과는 별도로 1993년에 공표한 '검찰청에 의한 피해자 및 증인의 처우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Treatment of Victims and Witnesses by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에서 검사의 판단에는 공익과 함께 피해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선언에 근거하여 1994년에는 검찰의 활동지침을 정리한 검사의 규칙에 있어서도 검사가 중요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함께 피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에서의 출석을 요청하고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증인에 대하여 신속히 필요경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11) 그 밖에 VS는 범죄에 의해 발생한 결과 및 피해자의 공포감 등 피해감정에 대해서 경찰이 피해자의 공술을 녹취하여 사법기관의 결정에 피해자의 공술을 참고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1990년에 제출된 '피해자현장'에서는 소추결정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익과 묘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관한 서류에서 피해자가 받은 신체상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93년의 '검찰청에 의한 피해자 및 증인의 처우에 관한 선언'에서도 소추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더라도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

셋째로 법원의 업무로서는 ① 법원에 있어서 피해자전용 대기실의 설치, ② 피고인 측과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청석 확보, ③ VS의 증인서비스에의 협력, ④ 아동 및 소년에 대한 비디오녹화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의 실시, ⑤ 증인시의 칸막이 설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로 보호관찰소의 업무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내용, 석방의 시기, 가석방 후의 주거장소, 석방결정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인정되었다.

### 3. 독일

독일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에 걸쳐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성폭력을 받은 여성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매우 다양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이성호, 김상균, 신석호, 2005; 김지영 외, 2014).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1976년 5월 폭력범죄피해보상법의 제정에 의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그 지위를 강화하는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1994년에는 범죄대책법에 의해 피해회복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증인 및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경감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94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소송참가, 부대소송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범죄대책법에 의해 피해회복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제도가 성인 형법전에 편입되었다. 199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 및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감경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능해졌다. 독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은 영국과 달리 독일 국적자에 한해 보상이 행해지고 있으며, 보상범위가 매우 넓다. 사망, 장애, 중상해에 대한 구조 뿐만 아니라 간병, 재활, 요양 등의 복지적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민간기구의 활동을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수준의 피해자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범죄피해자를 위한 가장 큰 단체로는 전국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로 ‘바이써링(Weisser-Ring)’이 대표적이고<sup>12)</sup> 1988년 베를

린피해자지원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연수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피해자지원 의식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에는 8개주에 걸쳐 함부르크 피해자지원 상담센터와 같은 연대체계를 구축하였다(임예윤, 2014:43).

#### 4. 대만

대만은 급속히 도시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에 수반되는 범죄와 범죄 피해자 수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무고한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지만, 종종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대만 정부는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보호와 사회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8년 5월 27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29일에는 재단법인 범죄피해인보호협회(재단법인 범죄피해자보호협회, 이하 ‘보호협회’)가 설립되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이성호 외, 2005). 보호협회는 민간 재단법인 성격을 가지지만, 법무부와 검찰 주도로 창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법무부 보호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호협회의 경비는 법무부 및 내무부의 편성 예산 외에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접수하여 풍부한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보호협회는 타이완 지역 및 푸지엔 진먼, 리엔지앙의 두 현에 21개의 사무소를 두어 피해자 및 그 유족생활 재건에 공동협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구축한 보호 체계를 통하여 국민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보호협회는 일반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가정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보호협회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유족과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을 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 본인의 신청, 경찰·검찰·법원·헌병

12) 독일의 바이셔링은 독립적인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화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에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에서 체계적으로 피해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장규원, 2010:254). 호주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카드(Victim Support Card)’를 교부하는데, 여기에는 담당 경찰관의 성명·소속·연락처, 피해일시, 사건번호, 피해자권리장전 요약, 피해자지원부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이정수, 2006:34).

대 등으로부터 통보, 보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호협회에서는 일반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낸다.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김현정, 공정식, 2015:77-79).

## 5. 일본

일본은 1966년 살인범죄의 박멸을 추진하는 유족회 등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에 피해자 보상제도에 관한 입법화가 시도되었고, 1974년 미쓰비시중공업 빌딩폭파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당시 법률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을 제정하였고, 당시에는 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2년에는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경의과치과대학내에 ‘범죄피해자상담실’이 개설되었고, 1995년에는 민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실이나 센터 등이 각지에 설립되었다(이강재, 2012).

한편 일본 경찰청에서는 1991년의 ‘범죄피해급부제도발족 10주년 심포지엄’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대책의 방법이 검토되어(조근석, 2006:48), 1995년에 실시된 범죄피해구원기금의 1996년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 등을 통해 ‘피해자대책요강<sup>13)</sup>이 책정되었고, 1996년부터 전국의 경찰에 지시되어 경찰에 의한 조직적인 피해자지원이 개시되었다. 일본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에 있어서 피해자 대책실의 설치 및 성적 범죄의 피해자를 담당하는 여성경찰관의 배치 등 피해자대책을 실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연락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연락 제도에서는 사건담당수사원에 의해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의 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피해자연락담당계’를 지정하고 있다. 이 ‘피해자연락담당계’는 피해자로부터의 각종 조회에 대응하는 창구업무 외에, 피해자 연락의 실시상황 관리, 피해자 연락을 담당하

13) ‘피해자대책요강’에는 경찰의 설치 목적의 달성, 수사활동에서 피해자의 협력확보,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존중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찰이 실시하는 피해자지원시책의 개요는 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② 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 ③ 정신적 피해의 회복, ④ ‘지정피해대책요원제도’의 실시, ⑤ 재피해의 방지, ⑥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다.

는 수사원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1996년 6월에는 범죄수사규범을 개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범죄피해자 대책의 추진이 이루어졌다. 범죄피해자 대책의 추진에는 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배려를 정한 제10조에 피해자에의 배려, 정보의 통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박성배, 2015:48).

## 6. 소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일찍이 전국적인 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일본은 피해자지원서비스 체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지역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 자원봉사자, 다른 민간단체를 통한 연계망을 형성하여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던 초기부터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국가의 행정운영의 특징인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조합으로 지역네트워크를 일찍이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중요한 점은 전국단위의 피해자지원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에 경찰과 자원봉사자, 유관단체들의 참여와 서브역할이 효과적인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백일홍, 2014:165). 또한 범죄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호·지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형사사법단계별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발전상이 대만과 비슷한 면이 있다. 요약하면, 선진국가들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경찰의 민관협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매우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경찰의 민관 협동과 연계

### 1.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법무부보다 경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4년 6월에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었

으나, 그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에 소극적이었다가 2015년에 들어서면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경우에는 인권국내에 인권구조과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설립하고 민관협동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직후부터 전담요원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 9월부터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서포터는 살인, 강도, 강간 및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범죄현장에서부터 피해자의 구호나안전 확보에 관한업무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경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단일창구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뜻한다(황정익, 2007:405-434). 피해자서포터는 수사부서와 지구대에 각 팀별로 1명씩 경험이 많고 모범적인 직원들 중에 선정되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부터 접촉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조사, 의료 및 상담기관 연결, 신변보호 및 사후 재피해방지 등을 전담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윤승영, 2005:279).

한편 2005년 8월 31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sup>14)</sup>.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피해자를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 센터는 의료, 상담, 수사,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심리 치유상담과 피해자유형에 따라 쉼터와 NGO(성폭력상담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연계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사와 관련하여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근무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를 수사상담하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후 신속한 경찰서 수사연계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고, 법률지원에 센터소속 무료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자문 연계를 제공하여 왔다(박성배, 2015:70).

최근 들어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을 전면개정(2015.5.21, 경찰청훈령 제767호)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4) 원스톱지원센터는 일본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체도로 보도되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할 만큼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강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38개소를 추가하여 총 60개소로 확대 할 계획이다(경찰청, 2013:72-73).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명을 개정하고,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준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팀)를 운영하고, 피해자대책관,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피해자보호관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 상담, 심리적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 형사절차상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규정하였다. 피해접수 및 동행, 조사 각 단계별로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서에 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출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의 종류 및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세사항을 규정하였다. 실무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임시숙소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경찰관의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연계,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등에 대한 전문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칙개정에서 특이한 점은 경찰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포함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개념보다 훨씬 넓은 피해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경찰의 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경찰관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각 지방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배치,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활동,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등이다.

현재 경찰 부서별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류경희, 2015).

〈표 4〉 경찰 부서별 피해자보호 · 지원활동

주무기능	제 도	내 용
피해자 보호 담당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연계 진중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심리전문요원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등
	피해자 임시숙소	단기간 숙소 비용 제공
	피해자 권리고지	피해자 조서작성 시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안내서' 교부
	교통편의제공	심야시간대 출석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손실보상제도 활용	주거지 등 오염 시 손실보상제도 활용한 정리비용 제공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위험성 판단기준 구체화, 신변보호조치 6가지 유형
강력범죄 수사과	신원관리카드	특정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가명조서 등 활용 신원노출 방지
	주거침입절도사건 피해자 위무활동	신고접수, 현장감식, 수사 및 피해품 회수까지 각 단계별 피해자 중심 위무활동
	동네조폭피해자보호활동	위해가능성에 따른 등급별 전담보호체계 구성
여성 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지정, 가정폭력 솔루션팀 운영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학교폭력 117신고센터 운영
	아동학대 피해자	전담인력 운영, 피해자 조사 시 윈스톱지원센터 등 활용 및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다자협의체 구성
성폭력 대책과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관, 지역협의체 구성, 통합지원센터 여성경찰관 파견, 진술분석 전문가·속기사 지원,
	기타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위협에 노출된 여성피해자 24시간 내 "범죄피해자긴급보호센터" 일시 보호(서울청 특수시책)
교통국	교통사고 피해자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 안내, 교통사고접수증 발급제도
외사국	외국인 피해자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피해자 보호·지원(외국인도움센터 운영 등)

## 2. 민간연계활동

현재 경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모범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 경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경찰의 경우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직접 개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호와 지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직접 개입이면

서도 법무부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에 피해자를 연계하는 수동적 형태의 활동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동안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행한 주요 실적들을 살펴보면(경찰청, 2015), 경기경찰청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후에 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을, 광주지방청에서도 이마트와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조성된 기금을 이마트 기부금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기금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약 915억원 중에서 법무부 289억 2천만원(35%), 여성가족부 337억 8천만원(41%), 보건복지부 195억 4천만원(23.7%), 그리고 경찰에는 임시숙소비용으로 겨우 2억 4천만원(약 0.3%)이 배정된 것과도 관련된다.

각 경찰관서별로 보면, 영천경찰서에서는 지방청 피해자보호팀, 수사·여청·청감계장과 영천시청(사회복지사), 영천영대병원(사회사업담당자), 대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솔루션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구미경찰서에서는 고용노동부(구미지청)과 협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취업지원을 돕고 있으며, 예천경찰서 풍양파출소에서는 동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트라우마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숙소를 모텔 등이 아닌 경찰관련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신변보호기능까지 강화하는 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지방청(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에 설치된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임시숙소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담사가 상주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유희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경찰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민간기구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있는 민관협동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센터내에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나 상담사가 상주하고 피해자에게 회복상담을 제공하며, 센터내에 피해자가 최대 5일내에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운영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는 피해자들의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하여 최근 국가적 개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은 시점에서, 국민의 생활안전과 매우 밀접한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은 다방면에서 사건직 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초기부터 개입하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성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현행법령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의 경우 최초로 피해자를 접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조기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하는 법률상 조직상 예산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경찰청의 지휘아래 전국 각 경찰관서들에서 다양한 보호·지원방안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피해자들의 보호·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각 형사기관들이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할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범죄사건이후 경찰이 피해자를 처음 접하면서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기관들에게 연계하는 수동적인 역할로 머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이후 처음 접하는 경찰관에게 사건정보 등 상당히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장규원, 2010:271; Karmen, Andrew, 1996:170), 사건직후 경찰관서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둘째는 현재 경찰청에 설치된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임시조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새로운 경찰청장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직무에 피해자보호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경찰 조직내에 공식적인 피해자보호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관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

이 1명밖에 없다는 점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관서별로 2-3명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각 경찰관서별로 지역사회내 피해자전문서포터(보호사, 상담사, 복지사 등)를 수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사건발생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서포터가 함께 출동하는 체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형사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과 차별적인 것을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수사 등 사건정보제공, 신변보호조치, 임시숙소제공, 위기개입상담, 사건현장청소, 생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적 의료적 복지지원 연계 등이 될 수 있다. 이는 사건직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지원은 경찰단계에서 제공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송치이후 부터는 법무부가 피해자보호·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때는 경찰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추가하여 재판정보제공,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법률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영향평가 제공, 전문가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서 시범운영중인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지역사회내에서 사건발생시 경찰은 피해자보호·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부분 연계해왔다. 그런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된다면, 두 기관 간에 업무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료적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지만, 임시숙소나 신변보호시설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데, 반면에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기개입상담, 자조모임지원 그리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임시숙소 및 신변보호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숙소제공 기간이 최대 5일 이내의 단기간이라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이 지나면 다른 복지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것은 경찰이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정책과도 맞지 않고, 일반 사회적 약자와

도 특성이 다른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전 확보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시 1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숙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사건초기에는 상담 장면에서 바로 나오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위기개입상담의 경우에는 사건직후부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 등이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재가방문형태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고, 재가상담결과 신변보호 또는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피해자종합지원센터로 안내하는 형태여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사회내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등간에 정례적인 솔루션회의 형태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모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단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특정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지역사회내에 솔루션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과 검찰 등의 피해자보호·지원담당자, 구청의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센터,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과 같이 특화된 그룹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반드시 경찰과 검찰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사건에 대한 처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건진행 중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 전반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지역사회 지자체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는 수사기관에서 하되, 범죄피해자 지원은 지역사회내 지자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수사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공정식 (2014). 범죄와 피해 심리분석기법, KOVA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pp. 72~73.
- 김지선, 이동원 (20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방안, 법무부
- 김재민 (2012). 피해자학, 청목출판사
- 김현정, 공정식 (2015). 강력범죄피해자중앙지원단 설치·운영방안, 법무부
- 김혜경, 오경식 (2014).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
- 김창윤 (2014).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 p. 117.
- 노성호, 권창국, 김연수 (2012). 피해자학, 지음출판사.
- 류경희 (201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포럼
- 박동수 (2004).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배 (2015).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홍 (2014).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지역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5).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송건섭·김상길 (200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별 시민평가와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7권4호, pp.233-253.
- 송귀재 (2014). 범죄피해자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대회
- 송병호 (2014).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코바 제8회 학술포럼자료집
- 송광섭 (2007).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지 제13호, pp. 235-258.
- 이강재 (2012).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연구, 법무부
- 이성호, 김상균, 신석환 (2005).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 이운호 (2007). 피해자학 연구, 집문당
- 이정수 (2006). “호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22-2), p. 34.
- 양문승 (2003).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보 제5호, pp.81-112.

- 임노현 (200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예윤 (2014). 범죄피해자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영 (2005).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13(1), p. 279.
- 윤현석 (2012).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4(1), pp. 304~305.
- 장규원 (2010).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p. 271.
- 장규원 (2010).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 254.
- 전지연, 차훈진 (2013).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9권 제1호
- 조근석 (2006).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호 (2010).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심리지원프로토콜 개발, 가톨릭대학교
- 최종술 (2002). 경찰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4권, pp.39-75.
- 황지태, 노성호 (201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정익 (2007). “범죄피해자보호와경찰활동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3), pp. 405-434.

## 2. 국외문헌

- Karmen, Andrew (1996).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3r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 170.
- Hough, M. and Mayhew, P (1983). the British Crime Survey: first report, Home Office research Study, No. 76.
- 警察論集 (1996). 「警察の“被害者策”にする究」, 49-4, p. 96.

【Abstract】

## Study on the police's protection·support of victims—declaring the Victims Protection years

Gong, Jung—Sik

South Korea's socioeconomic status is high enough to support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Until now, the Ministry of Justice was the only institution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but recently the national police is included. This is considered preferable, since the police is the one to contact the victims first- they can provide immediate support after the incident. Several limits in current laws and crime protection system exist. Therefore, give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model of public-private joint forms should be considered. In premise of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private joint system of justice and the maintenance, the range of police's involvement with crime supports will be determine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pol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maintain close cooperation, appearing as substantial care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crime victim protection, assistance from the police sta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o redefine the role of the police who first contacted i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support,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permanent cooperation framework, such as victims specialized police, victims protection agency, the third is to develop services for victim protection available from the police stage, and the fourth, opening Victim Support Center functioning as a temporary accommodation or safety zone for the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s. The fifth is to regularize solution conferen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he sixth is to divide of roles in state organization government in charge of victim's protection and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victim's support.

**Key words** : Crime victim protection and assistance,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 personal protection, victims dedicated police officer, victim protection agency